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 <목 차>

### 1. 자체정상화계획 작성기준 구체화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 성 자	이름	이호영
	담당부서 (과)	구조개선정책과		직급	사무관
	국장	최유삼		연락처	02-2100-2914
	과장	손성은		이메일	touchandgo@korea.kr

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 규제사무명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제출 등		
	2. 규제조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의5 및 <별표4>		
	3. 위임법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1항제2호바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2항		
	4. 유형	신설	5. 입법예고	2021.4.16.~2021.5.26..
규제의 필요성	6.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요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수립을 포함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개정안이 입법('20.12.2 국회 본회의 의결)됨에 따라, 자체정상화계획 작성·제출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시행령(영 제4조의3)에 규정하는 한편,</li> <li>- 그 밖에 자체정상화계획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동 고시 제25조의5) 및 자체정상화계획의 작성기준(동 고시 &lt;별표4&gt;)을 규정하고자 함</li> <li>○ 위기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자체정상화 조치가 작동되려면 감독당국 등이 자체정상화계획 작성·제출에 필요한 지침을 명확히 제공하고·보고받을 필요가 있으며, 중요금융기관이 작성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 개입 필요</li> </ul>		
	7. 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정상화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기타 사항* 등을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른 위기상황 발생 및 관련 조치에 대한 감독 당국 및 중요금융기관의 내부 보고체계, ② 자체정상화계획 수립·이행 지원을 위한 경영정보시스템 구축</li> </ul> </li> <li>○ 자체정상화계획 작성기준&lt;별표4&gt; 규정</li> </ul>		
	8.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규제집단) 중요금융기관인 5개 은행지주회사 (이하, '중요은행지주', '21.2월 기준) * KB·농협·우리·신한·하나금융지주</li> <li>○ (이해관계자) 금융감독원</li> </ul>		
	9. 규제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정상화계획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 및 작성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중요은행지주의 작성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이 가능해져, 위기 시 자체정상화 및 금융시장 안정 기여</li> </ul>		
규제의 적정성	10. 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기타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8년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규제비용에 비해 사회적 편익이 현저하게 더 크므로 규제도입이 타당</li> </ul>		
기타	12.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13. 우선허용·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제25조의5(자체정상화계획)  <u>①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1항제2호바목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u></p> <p>1. 자체정상화계획에 기재된 경영위기 상황의 발생 및 자체정상화 계획에 따른 조치와 관련한 감독 당국 및 금융기관 내부의 보고체계</p> <p>2. 자체정상화계획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내용</p> <p>②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정상화계획의 작성기준은 &lt;별표 4&gt;와 같으며, 그 밖에 자체정상화계획 작성을 위한 세부 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p> <p>③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자체정상화계획의 서식과 작성방법은 감독원장이 정한다.</p>

## 자체정상화계획 작성기준

(제25조의5 관련)

### 1. 자체정상화 계획에 관한 이사회 및 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 가. 자체정상화계획 수립, 지속적인 검증 및 개선 등과 관련한 이사회 및 경영진 등의 책임과 역할을 포함해야 한다.
- 나.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지표(이하 ‘발동지표’라고 한다.)에 관한 상시적인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발동지표별로 책임자를 선정해야 한다.
- 다. 경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하 ‘자체정상화수단’이라 한다.)의 발동 여부, 실행할 자체정상화수단의 결정 및 실행과 관련한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2. 핵심기능 및 핵심사업

- 가.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수행하는 기능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은행지주회사의 핵심기능으로 선정할 수 있다.
  - 1)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및 동 자회사가 그룹 내 계열사가 아닌 제3자에게 공급하는 기능인 경우
  - 2) 상기 기능의 공급이 갑자기 중단되는 경우, 제3자에게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거나, 부실이 과급되거나 시장의 신뢰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나.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는 자회사의 매출, 이익 또는 영업권 등의 주요 원천이 되는 사업을 은행지주회사의 핵심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 3. 예상되는 경영 위기상황 및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기준

- 가. 자체정상화계획에 포함되는 경영 위기상황 시나리오는 심각한 위기상황을 가정해야 한다.
- 나. 경영 위기상황 시나리오는 금융기관의 고유 위기, 시장전반의 위기 및 양자가 상호 결합된 위기상황을 반영해야 하며, 자체정상화수단의 효과분석 등에는 각 위기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 다. 발동지표는 자체정상화수단에 대한 발동시기를 식별하기 위해 설계된 정량적 지표 및 정성적 지표로 구성하고,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1) 은행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사업구조와 리스크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의 발동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 2) 발동지표는 자본적정성, 유동성 및 위기상황 등과 관련하여 정량적 지표뿐만 아니라 정성적 지표를 포함한다.
- 라. 자체정상화계획 발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발동지표의 기준(이하 ‘발동요건’이라 한다.)은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 1) 지표별 발동요건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과 감독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한다.
  - 2) 자본적정성 발동지표는 완충자본을 포함한 규제 자본비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동요건을 설정해야 한다.

3) 은행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속한 업권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유동성 규제비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동요건을 설정해야 한다.

4) 발동요건 충족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는 실제 위기상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른 조치수단 실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자본적정성 등 일부 발동지표의 경우 발동요건이 충족될 경우 조치수단을 즉시 실행도록 정하는 등 급작스러운 위기 상황 발생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 4. 경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 및 조치내용

가. 경영 위기상황 발생시 활용가능하고, 신뢰할 만한 자체정상화수단의 목록을 제시하고, 자체정상화수단의 효과, 집행 절차 및 소요기간과 예상 장애요인, 집행책임자 등을 상세히 제시해야 한다.

나. 효과 분석 시에는 위기상황이란 점이 감안되어야 하며, 효과분석에 필요한 가정을 명시해야 한다.

다. 가능한 자체정상화수단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증자 등 자본 확충 조치, 배당금지 및 임직원 성과 보상지급의 금지 등

2) 자회사의 매각, 사업부 분할

3) 출자전환 등을 통한 자발적인 채무조정

4) 자금조달 방식 다변화를 통한 자금 확보 방안 등(은행지주회사 내 유동성 및 자산의 이전 등을 포함)

#### 5. 경영 위기상황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분장, 조직구조 및 운영체제 등 영업지속 계획

가. 경영위기상황 발생시에도 금융시장의 인프라에 접근하는데 필요한 요건들을 파악하여 대비해야 한다.

나. 내부 업무 절차, 정보기술, 청산 및 지급결제 시스템, 공급 및 직원과의 계약 등이 경영 위기상황에도 유지 가능할 수 있도록 적절한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 6.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 등 의사소통 체계

가.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른 발동요건 충족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는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에 즉시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나.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는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 언론, 금융시장, 내부 직원 및 주주 등 다른 이해관계자와 자체정상화계획과 관련하여 적절한 의사소통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7. 경영정보시스템 등 구축 여부

가. 자체정상화계획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나. 경영정보시스템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지주 내 다른 자회사가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각 국가들은 부실한 거대금융기관의 파산을 막기 위한 막대한 재정 투입 등 큰 부작용 초래
  - 이에 금융안정위원회(FSB)는 대형금융회사의 부실 상황을 가정한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RRP)<sup>\*</sup> 제도 도입을 회원국에 권고
  - \* 정상화계획(Recovery) 및 정리계획(Resolution) 사전 작성(Planning): 대형금융회사는 자구노력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회복하는 정상화계획을, 정리당국은 정상화 곤란 시 질서정연한 정리 실행으로 금융시스템 혼란 및 공적자금 투입 최소화를 위한 정리계획을 평시에 작성
- '20.12.2. RRP 제도 도입을 포함한 금산법 개정안이 입법됨에 따라, 중요은행지주가 자체정상화계획의 작성·제출과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시행령(영 제4조의3) 신설을 통해 규정함과 함께,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의5 및 <별표4> 신설을 통해, 중요 금융기관으로 선정되는 은행지주회사의 자체정상화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기타 사항<sup>\*</sup>과 자체정상화계획 세부 작성기준을 규정할 필요
  - \* ①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른 위기상황 발생 및 관련 조치에 대한 감독당국 및 중요금융 기관의 내부 보고체계, ② 자체정상화계획 수립·이행 지원을 위한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 동 규제는 자체정상화계획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감독당국 등 보고 체계 등을 확립하고, 시행령 상 규정한 자체정상화계획의 주요 포함 사항의 구체적 작성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 위기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자체정상화 조치가 작동되어 금융시장 전반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감독당국 등이 자체정상화계획 작성·제출에 필요한 지침을 명확히 제공하고, 보고받을 필요가 있으며,
  - 자체정상화계획 작성 과정에서 중요은행지주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 개입(규제 설정) 필요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현행	자체정상화계획에 포함할 기타사항 및 자체정상화계획에 포함할 세부 작성기준 미규정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위기상황 발생 및 관련 조치에 대한 보고체계, 자체정상화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사항을 자체정상화계획에 미규정</li><li>○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세부 작성기준 미규정</li></ul>
규제대안1	대안명	자체정상화계획에 포함할 기타사항 및 자체정상화계획에 포함할 세부 작성기준을 규정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위기상황 발생 및 관련 조치에 대한 보고체계, 자체정상화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사항을 자체정상화계획에 규정</li><li>○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세부 작성기준 규정</li></ul>
규제대안2	대안명	자체정상화계획에 포함할 기타사항을 규정하되, 자체정상화계획에 포함할 세부 작성기준은 미규정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위기상황 발생 및 관련 조치에 대한 보고체계, 자체정상화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사항을 자체정상화계획에 규정</li><li>○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세부 작성기준 미규정</li></ul>

#### ○ 규제대안의 비교

- 1) **현행유지안** : 자체정상화계획에 경영 위기상황 발생 관련 보고체계 및 경영정보시스템 구축사항이 명시되지 않고, 작성기준도 미규정
  - 자체정상화계획에 기재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중요 은행지주 내부 및 감독당국에 보고되지 않아 신속한 자체정상화 조치가 어려워지며,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실효성이 낮을 우려
  - 자체정상화계획 수립 및 이행 지원을 위한 경영정보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을 경우, 경영 위기상황의 발동 및 조치에 필요한 적시성 있는 정보의 제공·공유가 어려워질 우려

- 자체정상화계획에 포함되는 주요 사항에 대한 세부 작성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자체정상화계획에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할 중요 사항이 누락되는 등 형식적 작성에 그칠 우려

2) 규제대안1 : 자체정상화계획에 경영 위기상황 발생 관련 보고체계 및 경영정보시스템 구축사항을 명시하고, 작성기준을 마련

- 자체정상화계획에 기재된 경영 위기상황 시 신속히 감독당국 등에 보고되어 실효성 있는 조치이행·점검이 가능하며, 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정보 공유로 위기시 이해관계자간 원활한 의사소통 가능
- 아울러, 구체적인 작성기준이 제시됨으로써 중요은행지주가 자체 정상화계획 작성 과정에서 겪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며, 위기 상황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이 가능

3) 규제대안2 : 자체정상화계획에 경영 위기상황 발생 관련 보고체계 및 경영정보시스템 구축사항은 명시하나, 작성기준은 미규정

- 경영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보고체계 작동 및 정보의 원활한 공유는 가능해지나, 자체정상화 계획에 포함될 필수 사항이 누락 되는 등 계획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

##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피규제기관인 중요은행지주 및 주요 이해관계자인 금융감독원과 의견수렴을 거쳤고, 추후 규정변경예고 과정에서 추가 의견수렴 예정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중요은행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요은행지주의 자회사인 중요은행과 자체 정상화계획 시범작성을 실시('18, '20년)</li> <li>- 자체정상화계획 작성지침을 중요은행과 협의를 통해 마련한 후, 동 지침에 따라 효과적 시범작성 완료</li> </ul>	반영 (규정변경예고 과정에서 추가 의견수렴 예정)
금융감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자체정상화계획 시범작성을 기 실시('18, '20년)</li> <li>- 금감원과 논의하여 자체정상화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중요금융기관의 시범작성시 활용</li> </ul>	반영 (규정변경예고 과정에서 추가 의견수렴 예정)

### 3. 규제목표

- 자체정상화계획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 및 작성기준을 규정함으로써,
  - 중요은행지주의 작성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이 가능해져, 위기 시 자체정상화 및 금융시장 안정 기여

## II.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동 규제는 중요은행지주가 경영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미리 수립 해둔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라 신속·효과적인 정상화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보고체계, 지원시스템 구축 및 작성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 만일 동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위기 상황에서 중요은행지주 및 감독당국 간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워지며, 정상화 계획상 조치의 이행이 지체되어 정상화 가능 시점을 실기할 우려
- 동 규제의 적용으로 중요은행지주는 자체정상화계획 작성과 관련된 보고체계 및 지원시스템의 구축을 요구받게 되지만,
  - 그 준수 의무 정도가 준수 이행을 통해 경영 위기 상황 시 얻게 되는 목적(위기상황의 효과적 극복을 통한 금융시장 안정) 대비 현저히 낮아, 목적과 수단간 비례적 타당성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우선허용· 사후규제
기술	경쟁	증기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 영향평가

### - 기술규제영향평가

- 기술기준(기술규정)이나 시험·검사·인증 등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제·개정, 국가표준(KS 등)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여부 파악이 필요하지 않은 규제로서, 해당사항 없음

### - 경쟁영향평가

- 중요은행지주의 자체적인 위기대응계획 수립의 일환으로서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 - 중기영향평가

- 규제 대상인 중요은행지주는 부실 발생시 금융시스템 전체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대형금융기관으로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 ○ 기타 고려사항

###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진입제한 또는 경쟁제한적 규제가 아니며, 신산업 분야의 시장 기능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 - 일몰설정 여부

- 동 규제는 일몰 규정이 없는 위임법령(금산법 제9조의3제2항, 중요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제출 의무)에 연계한 것으로서, 자체 정상화계획을 상시 작성함에 따라 일몰설정 대상이 아님

##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 시행령을 통해 규정한 사항 외의 자체정상화계획에 포함될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최소한의 필수 포함사항이 열거될 필요가 있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 등 적용 곤란

분류	적용여부	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중요금융기관이 경영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효과적인 정상화 조치를 이행 할 수 있도록 사전계획에 포함될 주요 포함사항과 보고체계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포괄적 개념 정의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유연한 분류 체계		중요금융기관이 경영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효과적인 정상화 조치를 이행 할 수 있도록 사전계획에 포함될 주요 포함사항과 보고체계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유연한 분류체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네거티브 리스트		중요금융기관이 경영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효과적인 정상화 조치를 이행 할 수 있도록 사전계획에 포함될 주요 포함사항과 보고체계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네거티브 리스트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사후 평가관리		중요금융기관이 경영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효과적인 정상화 조치를 이행 할 수 있도록 사전계획에 포함될 주요 포함사항과 보고체계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사후 평가관리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규제 샌드박스		중요금융기관이 경영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효과적인 정상화 조치를 이행 할 수 있도록 사전계획에 포함될 주요 포함사항과 보고체계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규제샌드박스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 해외사례

- (작성기준) FSB<sup>\*</sup>는 금융기관 정리제도 개선 권고안<sup>\*\*</sup>의 부속서(I-Annex 4<sup>\*\*\*</sup>)에서 자체정상화계획의 작성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 금융규제개혁 담당 최고 국제기구

\*\* 「Key Attributes of Effective Resolution Regimes for Financial Institution」(이하 'KA')

\*\*\* KA I-Annex 4: 자체정상화·정리계획의 필수요소

- 미국·EU에서도 관할당국이 자체정상화계획의 작성 기준·지침<sup>\*</sup> 등을 제공

\* (미국) 통화감독청(OCC), 자체정상화계획 지침(Recovery Planning : Comptroller's Handbook)

(EU) 은행정상화정리지침 - 부속서 A절(Bank Recovery and Resolution Directive - Annex Section A)

- (보고체계) FSB<sup>\*</sup>는 KA 부속서(I-Annex 4)에서 D-SIFI가 자체정상화 계획에 경영위기 상황 발생 및 조치와 관련한 대내외 보고체계 및 의사소통전략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

<FSB의 보고체계·의사소통전략 관련 권고사항>

#### KA I-Annex 4 : 자체정상화·정리계획의 필수요소 中

3.4 금융기관은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자체정상화계획의 이행이나 금융기관 경영진에 의한 개별 조치를 발동시키는 (정량적 및 정성적) 기준을 확인하면서, 명확한 지원절차와 단계적인 확대절차를 정리하여야 한다.

3.5 금융기관은 당국, 일반대중, 금융시장, 임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 미국<sup>\*</sup>·EU<sup>\*\*</sup>도 자체정상화계획에 경영위기 상황의 발생 및 정상화 조치에 대한 보고·의사소통 체계를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는 등, 이번 고시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

\* 美통화감독청(OCC) 자체정상화계획 지침(Recovery Planning: Comptroller's Handbook) 中  
"자체정상화계획은 은행이 통화감독청(OCC)에 발동요건의 충족 및 이에 따른 조치내용을 보고할 것을 규정하여야 한다... 자체정상화계획은 은행이 대내외 이해관계자에게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른 조치 이행 사실을 언제 어떻게 통보할지를 규정해야 한다."

\*\* EU 정상화계획 규정(EU 2016/1075) 제5조 제3항

(a) (자체정상화계획의 지배구조 부분은) 조치 발동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의 내부 보고 및 결정체계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한다. 이때 아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iii) 자체정상화수단의 결정기한 및 조치 발동요건 충족사실의 당국 대상 보고 시점

-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FSB는 D-SIFI를 대상으로 자체정상화계획 수립·이행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정보시스템(MI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up>\*</sup>의 구축을 권고

<FSB의 경영정보시스템 관련 권고사항>

**KA 12.2** 회원국은 금융기관에게 자체정상화계획을 수립하는 평상시와 실제 정리 시 모두 적시에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경영정보시스템을 유지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정보는 금융그룹 차원과 개별회사 차원에서 모두 활용가능하여야 한다.

- 미국<sup>\*</sup>·EU<sup>\*\*</sup>는 자체정상화계획의 이행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등, 이번 고시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

\* 美통화감독청(OCC) 자체정상화계획 지침(Recovery Planning: Comptroller's Handbook) 中 “자체정상화계획의 발동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경영진 또는 이사회의 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경영정보시스템을 확충해야 한다.”

\*\* EU 정상화계획 규정(EU 2016/1075) 제5조 제5항 : 자체정상화수단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의사결정단계에서 신속·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경영정보시스템

### ○ 타법사례

- 해당사항 없음

## 4. 비용편익분석

※ 동 규제는 중요금융기관이 실제 경영 위기상황에 처하더라도, 평시 수립해 둔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이행해 나감으로써 '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함(자체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함)'이 입법 목적으로,

- 발생하지 않은 미래 위기상황을 가정한 사전 대비 목적의 규제이므로 '비용편익분석서'에 따른 편익분석이 불가능하여,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에 따른 예외 사항으로 보아 과거사례 및 국제기구(FSB) 보고서에 근거한 정성적 편익 분석 실시

### ○ 정리비용 최소화(기대 편익)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각국 정부는 사전에 대비하지 않은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에 대응하기 위하여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

\* 당시 G20 회원국은 금융부문에 약 1.2조 달러(1,816조원) 투입

- 자체정상화계획 등의 작성으로 금융기관의 자체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에 체계적인 대응하는 경우, 정리비용을 최소화<sup>\*</sup>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 「리먼브라더스 파산조사관 보고서」에 따르면 리먼브라더스 파산 당시 사전계획(pre-bankruptcy plan)이 마련되어 있었다면 750억 달러의 파산비용을 절감했을 것으로 추정
- (FSB 보고서) '20.6월, FSB는 자체정상화·정리계획(RRP) 제도 등을 포함한 대형금융회사 규제 개선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결과 공개'
  - \* 「Evaluation of the effects of too-big-to-fail reforms : Consultation Report」('20.6.28)
- FSB의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에 따르면 정리제도 개선은 사회 전체적으로는 대규모 편익을 가져오는 것으로 추정

< 대형 금융회사 규제 개선의 손실규모 감소효과 >

	정리개혁 이전	정리개혁 이후	차이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의 손실 규모	GDP의 63.0% (약 45.5조 달러)	GDP의 57.6% (약 41.6조 달러)	GDP의 △5.40% (약 3.9조 달러)

\* 2019년말 FSB 회원국의 총 GDP : 72.05조 달러

## ○ 비용 분석

- 5개 중요은행지주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세부사항은 <별첨> 참조

### III.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중요은행지주의 자회사인 중요은행과 두차례 시범작성을 실시하였으며, 시범작성 과정에서 피규제자인 중요은행지주 등의 의견을 수렴한 사항으로 규제 준수 가능성이 매우 높음

##### ○ 규제 차등화 방안

- 중요은행지주에게 일괄 적용되는 규제로서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국제기구(FSB) 권고에 따라 해외 주요국에서도 다수 시행중인 제도임을 감안할 때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 위임법령(법 제9조의3제2항)에서 요구하는 자체정상화 계획을 미제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법 제28조제1항제6호)됨에 따라 실질적인 집행력을 확보

##### ○ 재정적 집행가능성

- 규제집행에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11년 FSB가 「대형 금융회사의 효과적 정리체계」를 마련하여, 회원국에게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 도입을 권고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과 도입을 지속검토하고, 중요금융기관 등 의견 청취
    - '15.10월, 「회생\*정리제도 도입 기본 방향」 발표
      - \* 추후('19년~) 국회 입법추진 과정에서 '자체정상화'라는 용어로 변경
    - 「민관합동 금융회사 회생정리TF」 ('16.1~'18), 「금융회사 회생 정리제도 도입 공청회」 ('16.12월) 개최로 다양한 의견 수렴
  - 오랜 논의 끝에,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 도입을 위한 금산법 개정안이 발의('19.7월)되었으나, 20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되었고
    - 21대 국회에서 재발의('20.6월) 되어, '20.12월 입법 완료
- ⇒ '21.6.30. 개정 금산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체정상화계획 작성·제출 등 시행에 필요한 하위 법령을 마련 중

### 2. 향후 평가계획

- 매년 금융감독원이 자체정상화계획을 중간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승인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자체정상화계획 상 주요 내용의 반영 및 작성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 제도 운영 과정에서 보완 필요사항 또한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

### 3. 종합결론

- 자체정상화계획의 작성·제출은 국제기구(FSB)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금융위기 발생시 중요금융기관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규제로
  - 피규제자(중요은행지주)에게 실효성 있는 작성지침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정상화계획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규제로 판단되므로 대안1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

##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1	2021	10	4.5	백만원, 현재 가치

규제대안1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제출 등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3747.89	3747.89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3747.89		
기업순비용	3747.89	연간균등순비용	453.26

##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lt;규제대안 1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제출 등&gt;

##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

업무제목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제출 등
설명	<p>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제출에 소요되는 비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규제의 목적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한 사전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임</li> <li>- 자체정상화 등에 소요되는 추가자본의 적립 의무(바젤위원회 권고사항)는 '16년에 이미 도입되어, 본 규제의 도입으로 해당 금융회사 대상 재무적인 규제가 가중된다고 보기 어려움</li> <li>- 결국, 본 규제의 도입에 따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자체정상화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행정비용으로 국한됨</li> </ul>

세분류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행)																					
활동제목	자체정상화계획 작성·제출																					
비용항목	행정부담																					
비용	3,747,887,883원																					
활동비용 특성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차~3년차 = [연간 투입인원(5) X 연간 투입시간(504) X 시간당 근로임금(원)(48,680) X 피규제자 수(5)]</li> <li>○ 4년차~10년차 = [연간 투입인원(3) X 연간 투입시간(504) X 시간당 근로임금(원)(48,680) X 피규제자 수(5)]</li> </ul>																					
근거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인건비(1~3년차) = 5명(연간투입인원) × [8시간(1일당 투입시간) × 63일(연간 투입일수)] × 48,680원(시간당 근로임금) × 5개 기관(피규제자 수)= 613,368,000원</li> <li>○ 연간 인건비(4~10년차) = 3명(연간투입인원) × [8시간(1일당 투입시간) × 63일(연간 투입일수)] × 48,680원(시간당 근로임금) × 5개 기관(피규제자 수)= 368,020,800원</li> <li>- 연간투입인원 : 1~3년차까지는 5명, 4~10년차에는 3명의 자체 정상화계획 작성 전담 인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요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담당자 명단 및 면담 등을 통해 파악</li> </ul> </li> <li>- 연간투입시간 : 자체정상화계획 작성기간인 3개월(약 63 영업일)을 기준으로 계산</li> <li>- 시간당 근로임금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의 300인 이상 금융기관(금융 및 보험업 - 금융업)의 '20년도 상용근로자 시간당 임금(48,680원) 준용</li> <li>- 피규제자 수 : 「21년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선정결과(20.6월 발표)에 따른 피규제 대상 금융기관 수(은행지주회사 5개) 준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舊명칭</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 선정 현황 &gt;</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th> <th style="text-align: center;">은행지주회사</th> <th style="text-align: center;">은행</th> </tr> </thead> <tbody> <tr> <td>2016</td> <td style="text-align: center;">신한·하나·KB·농협금융지주</td> <td style="text-align: center;">신한·제주·하나·국민·농협·우리은행</td> </tr> <tr> <td>2017</td> <td style="text-align: center;">신한·하나·KB·농협금융지주</td> <td style="text-align: center;">신한·제주·하나·국민·농협·우리은행</td> </tr> <tr> <td>2018</td> <td style="text-align: center;">신한·하나·KB·농협금융지주</td> <td style="text-align: center;">신한·제주·하나·국민·농협·우리은행</td> </tr> <tr> <td>2019</td> <td style="text-align: center;">신한·하나·KB·농협금융지주</td> <td style="text-align: center;">신한·제주·하나·국민·농협·우리은행</td> </tr> <tr> <td>2020*</td> <td style="text-align: center;">신한·하나·KB·농협·우리금융지주</td> <td style="text-align: center;">신한·제주·하나·국민·농협·우리은행</td> </tr> <tr> <td>2021**</td> <td style="text-align: center;">신한·하나·KB·농협·우리금융지주</td> <td style="text-align: center;">신한·하나·국민·우리·농협은행</td> </tr> </tbody> </table> <p>* '19.1월 우리금융지주 설립</p> <p>**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20.4.17.)에 따라 소규모 지방 은행인 제주은행은 시스템적 중요은행 선정에서 제외</p>		은행지주회사	은행	2016	신한·하나·KB·농협금융지주	신한·제주·하나·국민·농협·우리은행	2017	신한·하나·KB·농협금융지주	신한·제주·하나·국민·농협·우리은행	2018	신한·하나·KB·농협금융지주	신한·제주·하나·국민·농협·우리은행	2019	신한·하나·KB·농협금융지주	신한·제주·하나·국민·농협·우리은행	2020*	신한·하나·KB·농협·우리금융지주	신한·제주·하나·국민·농협·우리은행	2021**	신한·하나·KB·농협·우리금융지주	신한·하나·국민·우리·농협은행
	은행지주회사	은행																				
2016	신한·하나·KB·농협금융지주	신한·제주·하나·국민·농협·우리은행																				
2017	신한·하나·KB·농협금융지주	신한·제주·하나·국민·농협·우리은행																				
2018	신한·하나·KB·농협금융지주	신한·제주·하나·국민·농협·우리은행																				
2019	신한·하나·KB·농협금융지주	신한·제주·하나·국민·농협·우리은행																				
2020*	신한·하나·KB·농협·우리금융지주	신한·제주·하나·국민·농협·우리은행																				
2021**	신한·하나·KB·농협·우리금융지주	신한·하나·국민·우리·농협은행																				